

방송국 규정

- 제정 : 1984. 09. 23
- 개정 : 1987. 04. 01
- 개정 : 1989. 03. 01
- 개정 : 2006. 08. 2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방송국은 수원대학교 방송국(이하 “본 방송국”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호출 부호는 “S.U.B.S.”이다.

제2조(위치) 본 방송국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2-2 수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방송국은 수원대학교의 건학정신을 선양하고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대학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방송) ① 본 방송국은 제3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양, 음악, 기획, 보도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 제작하여 방송한다.

② 방송은 수원대학교의 교칙을 준수하여 검소, 정의, 창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③ 방송은 수원대학교 내의 모든 행사 및 학생활동을 지원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2장 국원

제5조(국원)① 본 방송국의 국원은 정국원, 수습국원, 명예국원으로 구분한다.

② 국원은 본 방송국의 규약 및 제반 규정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6조(정국원) 본 방송국의 정국원은 수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으로 소정의 선발과정 및 수습기간을 거친 뒤 국장의 명을 받아 방송주간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7조(수습국원) ① 본 방송국의 수습국원은 수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남녀학생 중 소정의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하며 그 전형은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5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습국원은 실무국장의 권한으로 1학기 내에 5명 이내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③ 수습국원 선발의 정원은 보도부 8명, 제작부 8명, 아나운서부 6명, 기술부 5명으로 하며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 부서당 2명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④ 본 방송국 수습국원의 수습기간은 선발일로부터 발령 전일까지로 한다.

⑤ 수습국원의 교육과정은 수습국원이 대학 방송인으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내용을 갖추어 5주 이상의 방송에 관한 교육과 소속부서에 관한 업무 교육을 받는다.

제8조(명예국원) 명예국원은 본 방송국 국원으로서 6학기를 마친 자로 하며 국원이 갖는 모든 권리 및 의무는 갖지 아니한다.

제3장 기구조직

제9조(국장) 국장은 대외적으로 본 방송국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국원 임명권 및 국원발령권을 가지며 총장이 겸한다.

제10조(방송주간) ① 방송주간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방송국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방송주간은 방송국장의 명을 받아 방송의 제작 및 운영에 관하여 임원들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실무국장) ① 실무국장은 본 방송국의 전 국원을 대표하고 모든 실무의 최종 책임을 지며 방송주간을 보좌하여 방송실무를 통괄하고 국원을 통솔한다.

② 실무국장은 업무의 성질상 단독 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 국원회의를 통하여 결정 할수 있다. 이때 실무국장은 투표권을 갖기 않으나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③ 방송실무국장은 4학기를 마친 정국원 중에서 국장의 명을 받아 방송주간이 임명한다.

제13조(총무) 총무는 재정에 관한 업무를 실무국장과 함께 집행하고 실무국장을 보좌하며 견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4조(부장) 부장은 임원회의의 추천을 거쳐 차기 실무국장이 본 방송국원으로 4학기를 마친 자중에서 지명 하되 실무국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방송주간이 임명한다.

제15조(제작부장) 제작부장은 제작부의 관할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갖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보도부원의 통솔 및 교육의 책임을 진다.

제16조(보도부장) 보도부장은 보도부의 관할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갖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아나운서부원의 통솔 및 교육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아나운서부장) 아나운서부장은 아나운서부의 관할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갖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아나운서부원의 통솔 및 교육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기술부장) 기술부장은 기술부의 관할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갖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기술부원의 통솔 및 교육의 책임을 진다.

제4장 재정

제19조(재정) 본 방송국의 운영자금은 학교당국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예산) 본 방송국의 예산은 매학기 초에 방송주간이 편성하여 방송국장의 결정을 받아 집행한다.

제21조(결산) 방송주간은 매 학년도 말에 해당 학년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방송국장의 재가를 받는다.

제22조(회계년도) 본 방송국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5장 징계

제23조(징계) ① 국원이 본 방송국에 지대한 누를 끼쳤을 경우 국장은 그에 해당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견책, 경고, 제명으로 구분한다.

제24조(견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원은 견책으로 징계한다.

1. 녹음 프로그램을 생방송 했을 경우 그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한 국원
2. 제작자의 경우 제작의 준비는 하였으나 운영을 타인에게 대행시킨 국원
3. 아나운서 기술의 경우 자신의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대행시킨 국원
4. 정식으로 공고된 행사에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참한 국원

제25조(경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원은 경고로 징계한다.

1. 제작자의 경우 무단으로 담당 프로그램을 방송치 아니하거나 제작의 준비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대행시킨 국원
2. 아나운서 기술의 경우 자신의 담당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대행시키지 아니하고 방송치 않는 국원

제26조(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원은 제명으로 징계한다.

1. 수원대학교의 직을 상실한 국원
2. 학사 경고를 받은 국원
3. 학기 중 3회의 경고를 받은 국원
4. 방송에 관한 일로 국원간에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시켰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국원

제27조(징계공고) 제24조내지 제26조에서 명시한 각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실무국장은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 이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198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